

전주지방법원 2017. 5. 17 선고 2016나1338(본소), 2016나2751(반소)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· 소유권이전등기]

재판경과

전주지방법원 2017. 5. 17 선고 2016나1338(본소), 2016나2751(반소) 판결

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. 1. 19 선고 2014가단12572 판결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, 피항소인A

피고(반소원고), 항소인B

변론 종결 2017. 3. 15.

판결 선고 2017. 5. 17.

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. 1. 19. 선고 2014가단12572 판결

주 문

1. 피고(반소원고)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(반소원고)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본소, 반소를 통틀어 피고(반소원고)가 부담한다.

N

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

1. 청구취지

가. 본소

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고만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'원고'라고만 한다)에게 익산시 C 대 876㎡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1, 2, 3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가' 부분 11㎡ 지상 창고 11㎡를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라.

나. 반소

원고는 피고에게 익산시 C 대 876㎡ 중 별지 제2 도면 표시 11, 12, 13, 14,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ㄴ)부분 3㎡에 관하여 2003. 1. 25.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(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)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,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(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).

2. 피고의 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항변 및 주장의 요지

피고의 부 망 E이 1983. 1. 25. 익산시 F 대 349㎡를 매수하면서 익산시 C 대 876㎡ 중 별지 제2 도면 표시 선내 (ㄴ)부분 3㎡(이하 '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'이라 한다)를 경계지 내에 포함하여 매수한 후 그 지상에 이 사건 창고를 설치하였고, 1996년 경계지 내에서 이 사건 창고를 증축하였는바,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·공연하게 계속 점유하여 2003. 1. 25.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며 망 E이 2014. 1. 3. 사망한 후 피고가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그 점유를 승계하였으므로, 피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. 따라서 이 사건

창고의 철거 및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고,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살피건대,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,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만으로는 피고의 부 망 E이 1983. 1. 25. 익산시 F 대 349m'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을 포함하여 매수하였다거나 위 매수 당시 이 사건 창고를 설치하여 그때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을 20년간 계속하여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그렇다면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, 망 E의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전제로 하는 반소청구 역시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[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2017. 5. 10.자 참고서면을 통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, 권리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, 주관적으로 그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,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,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는바(대법원 2010. 2. 25. 선고 2009다58173 판결 참조),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,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]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,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,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의 반소청구도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김봉규

판사정성화

판사강인혜

별지